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이 지 은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다양한 언어·문화권 출신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사법통역은 수사단계에 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통역을 가리키며, 외국어 뿐 아니라 수화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 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이 사법통역사의 역할이다 (Gonzalez et. al. 1991; Mikkelson 2000; NAJIT n.d.; Hale 2004).

사법통역을 포함한 모든 통번역은 규범에 의해 지배를 받는 행위이다(Toury 2000: 204; Inghilleri 2003: 243)¹⁾ 통역규범은 통역사 집단 내에서 내재화된 행

* 본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조원철 부장관사님과 사법연수원 교수님들, 김대인 교수님, 조성현 수화 통역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1) 번역 규범 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Toury(1995/2004: 206)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동제약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규범에 따라 통역사의 선택이 이뤄진다(Garzone 2002: 110). 다시 말해 통역행위는 통역규범에 준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의 산물이다. 사법통역 규범의 핵심은 정확한 통역과 사법통역사의 윤리적 역할로 압축된다.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직업윤리가 중시되는 것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이 곧 증거가 되고, 사실인정이나 양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3).

두말할 나위 없이 규범에 어긋난 통역행위는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사법정의를 해칠 수 있다. 이같이 사법통역 규범은 사법통역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나 아직까지 국내 통역학계나 법조계에서 사법통역 규범이나 사법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법통역과 규범에 대한 관심이 낮고, 사법통역 종사자들이 전문 통역사가 아닌 이유가 클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법통역에서는 통역사의 통역능력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법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낮은 통역요율을 적용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통역인을 고용하는 등 아직까지 사법통역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체계적 교육도 부실하다.²⁾

사법통역사의 자격규제와 사법통역교육이 부재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이 사법통역 규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함

일반적인 가치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은 특정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적합한 행동(performance)으로 나타난다 고 말하였다. Chesterman(1993: 8-9)은 기대규범(expectancy norm)과 전문직업 규범(professional norm)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문법, 수용성, 스타일 등의 면에서 번역이 어떠해야 한다는 번역텍스트 수신자가 갖고 있는 기대와 관련된 규범이고, 후자는 번역과정에서 수용된 방법과 전략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

- 2) 대법원 재판예규 제1040호 제7조는 각급 법원이 통역경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통역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통역인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법통역에 입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정통역인을 위한 편람과 같은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개 언어에 국한되며, 번역예문 오류도 다수 있어서 교육자료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김한식 외 2008; 이지은 준비중 참조).

으로써 사법통역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관련된 규범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법인과 통역인의 인식을 조사한다.³⁾ 이를 통하여 통역규범 인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법통역 규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법통역사의 역할과 윤리에 관한 규범

한국 형사법정 통역인 교육용으로 제작된 법정통역인편람(법원행정처 2009: 40-41)과 형사법정통역인 교육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3-57), 그리고 미국 사법통역사협회(NAJIT)와 호주 통번역사협회(AUSIT)의 윤리규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사법통역 규범의 3대 원칙은 정확성, 중립성, 비밀유지이다.

법정통역인편람(법원행정처 2009)에 제시된 통역인 주의사항 제1항은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통역인이 법정에서 통역하기 전에 선서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⁴⁾ 성실하게 통역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통역한다는 의미이겠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통역한다고 해서 통역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확한 통역은 통역사의 능력 문제이지 통역인의 의도나 성실성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법통역에서 정확성이 강조되다 보니 통역사의 해석이 배제된, 문자 그대로 축어역(verbatim interpreting)을 사법통역의 규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주로 법조인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Morris 1995; Fowler 1997 등). 그렇지만 축어역은 출발어의 모든 단어에 대응하는 동의어가 목표어에 있을 것이라는, 통역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발상으로 축어역과 직역은 정확한 통역과 거리가 있다(Morris 1993, 1995; Mikkelsen n.d.; Hale 2004, 2007 등).

정확한 통역은 원문의 내용과 표현, 뉘앙스 및 의도된 효과를 최대한 충실

3) 본고에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이용자를 가리키는 사람을 사법인이라 칭하고,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자를 통역인 또는 사법통역사라고 칭한다. 통역인은 통역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칭할 때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본고에서는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역사와 통역인을 혼용한다.

4) 통역인이 고의로 부정확한 통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 제 154조).

하게 재표현하는 것이다(de Jongh 1992; Gonzalez et al. 1991 등). 사법통역에서는 원진술자의 말을 빼거나, 보태거나, 간추려 말하거나 요약해서는 안되며, 화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문화 배경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스타일적인 요소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Gonzalez et al. 1991: 16-17). 진술내용과 함께 말하는 방식과 태도 등이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ale 2004; 이순동 2009; 홍기만 2010 등), 언어사용역을 포함한 어휘, 담화표지, 어조 등 스타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생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나 발화오류를 적절히 편집하여 언어적 효율성을 꾀하고 간결한 표현을 지향하는 일반통역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법통역에서는 비록 증인이 확연한 사실을 틀리게 말하여도 진술한 대로 통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문서답을 하거나 답변이 비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통역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통역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법원행정처 2009: 44). 청자의 이해를 고려해서 알아듣기 쉽게 고쳐서 말하는 것은 사법통역에서 기대하는 정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어가 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 법률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언어사용역을 조절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사법통역사의 역할이 아니다(Hale 2004, 2008).

이러한 사법통역 규범 내에 갈등요소가 없지 않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사법인들이 법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통역인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 법률적 시각에서 사법통역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통역기계나 언어도관에 빚대어 사법통역사의 역할을 기계적인 언어치환 정도로 간주하고, 축어역을 요구하는 시각은 비판을 받아왔다(Morris 1993, 1995, 2010; Laster and Taylor 1994; Lee 2009a 등).

그런가 하면 통역학계 내에서도 사법통역사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통역사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대화 주체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1991; Laster and Taylor 1994 등). 그러나 사법통역사의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자(helper)’나 보조자 내지 대변자와는 구분된다(Hale 2008: 112-114 참조). 통역학자들은 통역기계와 같은 사법통역사의 역할

은 반대하면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중재를 포함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이다(Fenton 2001; Lee 2009a 등 참조). 사법통역사의 문화중재는 민감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쟁점과 관련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aster and Taylor 1994; Barnett 2006 등). 사법통역사가 문화 전문가가 아니며, 문화중재를 함으로써 자칫 통역사로서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중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유일한 이중언어 구사자로 양쪽 문화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 통역사가 문화중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경우 문화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Lee 2009b, 2009c 참조). 그렇기 때문에 난민신청과 관련된 사법통역 분야에서 통역인의 문화중재 등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없지 않다(Barsky 1996 등).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발화나 문법 오류 등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해당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과 원활한 신문 진행을 기준으로 사법통역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NAJIT; Barnett 2006: 120). 이러한 점을 의식할 때 문법적 오류나 논리적 오류를 포함한 원발화를 그대로 통역하는 것도 통역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만 보아도 사법통역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갈등의 소지가 있다.

법정통역인편람(법원행정처 2009)에서 제시한 제2항은 공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거절해야 한다.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잠재적인 성격의 것이라도 공개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으로 참여하였다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원행정처 2009: 40). 수사단계에서 통역한 통역인을 법정통역에서 회피하는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입수한 정보가 예단을 갖게 한다든지 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경찰이나 검찰직원이 통역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며,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가 변호와 통역 두 가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⁵⁾

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사건에서 해당언어 통역인의 부족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통역인편람에서 제시한 주의사항 제3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는 기밀 보장에 관한 내용이고, 제4항은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통역이외의 상담 행위를 금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09: 41). 사법통역사의 역할은 통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통역사는 법원의 행정보조자가 아니며, 수사나 변론에 참여해서 안된다(Edwards 1995: 68).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 사법통역 연구는 사법통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 사법통번역교육과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한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사법통역 규범에 대해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김진아 외 2008; 김한식 외 2008; Lee 2010 등). 특히 문화 중재를 포함한 사법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국내 선행연구로 꼽을 수 있는 김한식 외(2008)는 수사기관에서 통역하는 24명의 통역인을 대상으로, 김진아 외(2008)는 판사와 통역담당 법원 행정직원 41명과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사법통역사의 역할 등에 관한 답변을 토대로 조사연구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는 실제 사법통역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통번역대학원 출신자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반면 경찰과 검찰, 변호사 등 주요 사법통역 사용자 집단이 제외됨으로써 연구범위의 한계가 있었다.

수사 주체인 검·경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당사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법통역 규범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실제 통역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에 관한 연구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법통역 사용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도 사법통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통역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수화 통역사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본고는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통역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사법인과 통역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 초점을 맞추지만 본 연구는 본래 설문조사와 인터뷰, 담화연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법통역 실태를 조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변호인, 친구 등 중립적일 수 없는 주체가 통역을 한다고 한다(김진아 2008).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설문조사에는 총 187명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 사법인이 139명(판사 72명, 변호사 41명, 경찰 5명, 검찰 21명), 통역인이 48명(외국어 통역인 16명, 수화 통역인 32명)이다.⁶⁾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대부분의 경우 조사에 도움을 준 지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주로 이메일로 교신이 이뤄졌다. 이러한 간접적인 조사방식 때문에 정확하게 모집단 대비 표본집단의 응답률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교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호주 사법인과 통역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2009a)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과 유사하다. 설문지는 총 37-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공통적인 문항과 함께 사법인과 통역인 중 한 집단에 해당 하는 질문도 있어서 사법인용과 통역인용으로 구분하였다. 정확성에 관한 주관식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객관식 질문이다. 객관식 질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답변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설문답안을 엑셀화일에 옮겨 정리하였고, SPSS 16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사법인과 통역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여부는 Pearson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래에서 논의할 연구문제는 참가들의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을 포함한 프로파일과 통역인의 경우 사법통역 빈도와 사법인의 경우 외국인 사건 처리 빈도, 통역인의 역할, 그리고 사법통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인 정확성과 관련된 통역 방식 및 문화중재 등이다.

6) 사법연수원을 통해 판사 참가자를 섭외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사법인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변호사 참가자를 섭외하기 위해 각 지방 변호사협회에,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섭외하기 위해 검찰청 외사과, 경찰수사관을 섭외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 외사과에 각기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거나 응답자가 매우 적어 지인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통역인 참가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어렵사리 두 곳의 지방법원의 도움을 받아 통역사 명단을 확보한 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타진한 후 설문지를 보냈다. 법원에 등록된 수화 통역사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수화 통역사 참가자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4. 연구결과

4.1. 참가자 프로파일

먼저 조사 참가자들의 연령과 성별, 직업 경력, 그리고 통역인의 경우 통역 언어, 학력과 통역교육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를 표 또는 그림과 함께 소개한다.

표 1. 연령 (단위: %)

연령	사법인 (N=139)	통역인 (N=48)
20대	1.4	14.5
30대	41.7	52
40대	48.9	22.9
50대	7.9	10.4

설문조사 참가자들 중에 30, 40대 응답자가 많았다. 사법인 중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48.9%), 그 다음으로 30대(41.7%)가 많았다. 통역인 중에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22.9%).

표 2. 응답자의 성별구성 (단위: %)

성별	사법인 (N=139)	통역인 (N=48)
남	76	24
여	12.5	87.5

사법인 응답자 중에서 남자 비율이 76%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반면 통역인 중에서는 여자가 절대 다수(87.5%)를 차지하였다.

표 3. 직업경력 (단위: %)

경력	사법인 (N=139)	통역인 (N=48)
5년 미만	17.9	79.1
5-10년	36.9	14.5
11-15년	20.8	4.1
16-20년	12.9	0
21년 이상	10.7	0
무응답	0.7	2

직업경력에서 양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의 직업별 경력을 5년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 사법인 중에는 5년-10년 사이 경력자가 가장 많았다 (36.9%). 통역인 집단은 5년 미만 경력자가 80%에 가까웠으며 10년 이상 경력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 4. 외국어 통역인의 통역 언어 (단위: 명수)

언어	통역인 답변자 (N=16)
중국어	5
일어	3
영어	2
태국어	1
몽골어	1
인도네시아어	1
독어	1
화란어	1
러시아어	1

수화 통역사를 제외한 응답자 중에서 중국어 통역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어, 영어 순으로 각기 3명, 2명이었다. 그 외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화란어, 러시아어가 각 한 명이었다.

표 5. 통역인의 학력 (단위 %)

학력	외국어 통역사 (N=16)	수화 통역사 (N=32)
고졸	6.2	15.2
대졸	37.5	59.3
석사이상	56.2	13
기타	0	9.3
무응답	0	3

통역인 대다수가 대졸이상의 학력 보유자였다. 외국어 통역사 가운데 대학원 졸업이상 학력이 가장 많았다(56%). 수화 통역사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59%). 외국어 통역사 중 한 명만 고졸 학력이었고, 나머지는 대졸 학력이었다. 수화 통역사 가운데 석사이상 학력자 비율은 낮았고, 고졸자가 많았다. 기타에 속한 9%는 대학 재학생이었다.

표 6. 통역교육유무 (단위 %)

통역교육	외국어 통역사 (N=16)	수화 통역사 (N=32)
교육받음	33.3	34.3
받지않음	50	65.6
무응답	13	0

통역교육을 받지 않은 통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외국어 통역사 가운데 통역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수화 통역사 가운데 65.6%였다. 통역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통역인이 1/3 정도였다. 외국어 통역사들이 답한 통역교육 형태는 학위과정의 통역교육과 단기 교육이었다. 수화 통역사들은 개인 사사를 포함하여 농아단체, 종교단체,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통역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독학 등의 방법으로 자습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사법통역교육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법통역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외국어 통역사 가운데 19%만 사법통역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사법통역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자 한 명은 법원에서 실시한

한두 시간 가량의 교육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34%의 수화 통역사가 법원이나 수화교육원, 농아인 협회에서 하는 수화 통역사 재교육 등을 통해 사법통역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사법통역교육 이수자가 적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김진아 외(2008)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며, 대다수의 사법통역사가 체계적인 통역교육을 통해 사법통역 규범을 학습하지 않고 사법통역실무에 임하는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고용형태 (단위 %)

고용형태	외국어 통역사 (N=16)	수화 통역사 (N=32)
전업	44	84
부업	56	13
기타	0	3

전문통역사라고 할 때 통역을 직업으로 삼은 전업통역사이자 전문통역교육을 받은 통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통역인 상당수가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전업으로 통역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사법통역사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어 통역사 가운데 44%가 통역일을 전업으로 하고 56%가 다른 본업이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수화 통역사 중 84%가 통역을 전업으로 하며, 13%만 부업으로 통역을 하고 있었다. 통역을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항목도 포함시켰으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외국어 통역사에 비해 통역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수화 통역사가 많은 것은 참가자 가운데 농아관련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수화 통역사가 많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4.2. 외국인 사건 처리/통역 빈도

직간접적인 사법통역 경험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법인 응답자들에게는 외국인 사건을 얼마나 자주 처리하는지, 통역인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통역하는지 물었다. 통역인 전원이 사법통역 경험이 있었다. 사법인 중에 외국인 사건 처리 무경험자도 18.7% 있었지만, 80% 넘는 사법인은 외국인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

빈도면에서는 외국인 사건을 한 달에 몇 건 처리하는 사법인과 일 년에 몇 건 처리하는 사법인이 각기 25%대로 비슷하였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사법인들이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역을 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무상 차이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법인에 비해 통역인이 외국인 사건을 맡는 빈도, 즉 사법통역을 하는 빈도가 높았다. 통역인 중에 1 년에 몇 건 외국인 사건 통역을 한다는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통역인 응답자들이 한 달에 몇 건을 맡는다고 답하였다(37.5%).

4.3. 통역인의 역할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법통역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관련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여섯 가지 ‘사법 기관의 보조자’ 내지 ‘피고용인’, ‘대변자’, ‘언어 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통역기계’ 중에서 복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⁷⁾ 기타와 무응답자를 제외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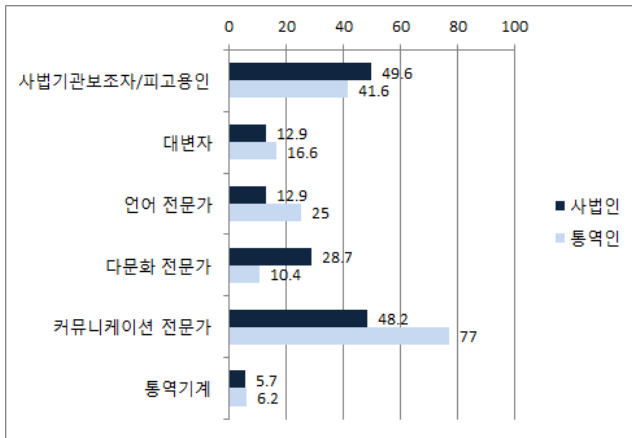


그림 1.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의견 (단위 %)

7) Lee(2009a)는 ‘communication facilitator’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국내 선행연구(김진아 외 2008; 김한식 외 2008)와 비교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법통역사의 다양한 역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복수 선택을 허락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사법인들과 통역인들 사이에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사법인(49.6%)이 통역인을 사법기관의 보조자 내지 피고용인이라고 답하였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법인이 통역인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답하였다(48%). 반면 통역인 중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77%), 사법인에 비해 30% 정도 높다. 사법인에 비하면 응답률은 조금 낮았지만 통역인의 42%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역인이 사법기관의 보조자 내지 피고용인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수화 통역사에 비해 외국어 통역사 중에 사법기관의 보조자 내지 피고용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숫자가 두 배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설문 조사에 응한 외국어 통역사 대부분이 현재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이고, 수화 통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 같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사법통역사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답한 통역인의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사법인의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김진아 외(2008)에서 법조인(판사와 법원직원)의 75.61%가 법정통역인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답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 사법인의 48% 정도가 이같이 답하였다. 또한 김진아 외(2008)에서는 통역인의 약 15%와 김한식 외(2008)에서는 통역인의 26%가 자신들이 사법기관의 피고용인이라고 답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역인의 42%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통역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통역인의 직업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며, 이러한 연구결과와 차이는 위 선행연구에 통역대학원 졸업생이 상당수 참여하는 등 참가자 구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역인을 중립적이고 독립된 전문가로 보지 않고 사법기관의 피고용인 내지 보조자로 인식할 때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호주에서 실시한 Lee(2009a)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67%의 호주 사법인들이 통역인의 역할이 통역기계에 가깝다고 답하여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한국 사법인들 중 통역기계로 간주한 응답자는 단 5.7%에 불과한 점이다. 호주 사법인에 비해 한국 사법인들이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법통역사의 역할에 관해 호주 사법인과 통역인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답변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외국어 통역사 중에서 19%가 통역기계를 선택하여 수화 통역사나 사법인들의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으나 호주 통역인의 28%가 사법통역사의 역할을 통역기계에 가깝다고 답한 결과에 비하면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Lee(2009a)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법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직간접적인 사법통역 경험과 빈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4.4.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사법 통역에서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확성, 중립성, 비밀 유지, 효율적인 시간 사용, 문화적 중재 중에서 복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복수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기타와 무응답자를 제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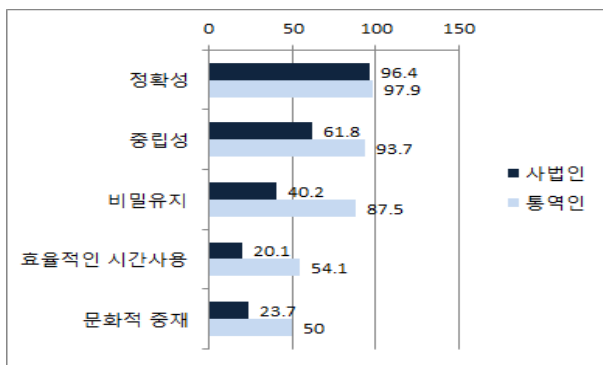


그림 2.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단위 %)

응답자 모두 공통적으로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고른 항목이 중립성이고,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비밀유지를 골랐다. 이 세 가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법통역 규범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법인의 응답률이 통역인보다 낮았다. 효율적인 시간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통역인의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20.1% v. 54.1%). 통역인들이 시간을 많이 의식한다는 의미로

도 볼 수 있고, 이는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등 통역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중재에 대해서도 사법인과 통역인의 응답률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23.7% v. 50%). 통역사의 문화중재 내지 개입은 통역사의 역할 및 통역의 정확성과 관련되며, 아래에서 별도로 논하겠다.

4.5. 통역의 정확성

참가자들은 사법통역에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통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관식 문항과 함께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관련된 몇 가지 객관식 문항을 포함시켰다. 정확한 통역은 직역에 가까운 통역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사법인들 가운데 많았고, 그 중에서도 판사 응답자가 많았다. 판사의 33%, 변호사의 15%와 검찰 28%의 응답자들이 직역에 가까운 통역이 정확한 통역이라고 답하였다.

통역인들의 답을 보면 대체로 직역보다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반인인 피고인에게는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통역하고 사법인에게는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는 통역인의 답변도 있어서 청자의 이해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필요하다면 문화나 언어적 문제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야 한다는 통역인들의 답변도 있었다.

아래에는 정확한 통역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를 소개한다.

가. 통역시 스타일 재생

표 8. 통역시 스타일 재생 (단위 %)

스타일 재생	사법인	통역인
화자 스타일 살려야 함	55	46
내용만 정확히 전달	42	46
기타	1	10
무응답	2	0

화자 스타일(speech style)을 살려서 통역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용만 정확히

통역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법인의 55%는 화자의 스타일을 살려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42%는 내용만 통역해야 한다는 답을 하였다. 통역인 집단에서는 스타일 재생에 대해 의견이 각기 46%였다.

많은 숫자의 응답자가 통역의 정확성을 명제적 의미 전달에 국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김진아 외(2008)에서는 사법인의 85%와 통역인의 76%가 원발화자의 어조나 스타일을 전달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Lee(2009a)에서 호주 사법인 참가자의 60%와 통역인의 78%가 스타일을 그대로 재생해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의 응답률이 낮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외국어 통역사의 답변만을 보면 38%만 스타일 재생을 지지하여 응답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법통역교육이나 자격시험을 거친 적이 없는 한국 통역인들이 스타일을 재생해야 하는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결과일 수 있고, 구술심리와 구술증거에 있어서 한국 사법제도와 문화가 영미 당사자주의 재판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 문항에서는 사법통역에서 보존해야 할 발화 스타일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 문법오류, 중간휴지, 반복, 말고침(self-correction), 비속어, 애매모호성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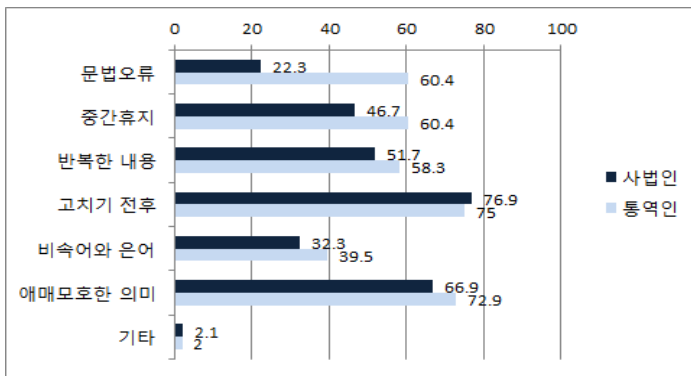


그림 3. 통역시 보존해야 할 요소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말 고치기 전후 내용이다. 증인이나 피고인이

고쳐 말하기 전후의 말을 다 통역해야 한다고 답한 참가자가 사법인의 76.9%, 통역인의 75%에 달했다. 이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통역인 응답률이 사법인보다 높아 사법인의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있었던 답은 애매모호함이다. 사법인의 66.9%와 통역인의 72.9%가 애매모호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문법오류 재생에 대해서는 사법인의 22.3%, 통역인의 60%가 이 답을 선택하였다.

Lee(2009a)에서 호주 사법인의 54%가 문법오류도 통역시 재생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60%를 넘는 사법인이 은어, 비속어를 정확하게 통역해야 한다고 답한 점을 볼 때 본 연구에 참가한 한국 사법인들의 1/3 정도만 비속어와 은어 등을 통역과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답하여 정확한 통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간 휴지와 반복 발화의 재생에 관해서는 응답률이 평균적으로 절반을 넘거나 과반수에 근접하는 응답률을 보여 Lee(2009a)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편이다.

진술자의 말하는 태도나 방식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고려대상이지만 원진술자의 발화 스타일을 보존하는 통역에 대해 사법인의 관심이 낮은 결과는 명제적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진술자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법통역 규범과 거리가 있는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사법통역의 질과 나아가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통역행위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동문서답 통역

사법인 중 50.3%가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통역인 가운데 불과 22.9%만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통역인의 64.5%는 질문을 다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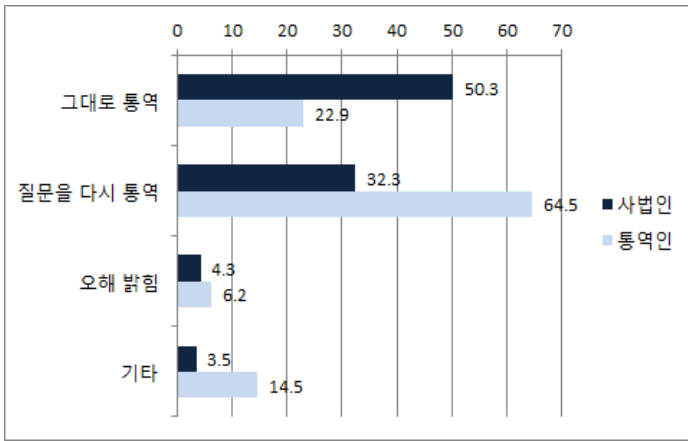


그림 4. 동문서답 통역 (단위 %)

사법인과 통역인의 답변 차이는 Pearson 카이제곱결과 통계적 차이로 확인되었다. 김진아 외(2008)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법조인의 56%와 통역사의 53%가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김한식 외(2008)에서도 62.5%의 통역사 응답자가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한다고 답하였다. 질문을 쉽게 풀다는 말은 결국 청자의 이해와 순조로운 진행을 우선 시하는 경향을 가리키며, 구술증거에 대해 일단 즉시 통역해야 한다는 사법통역 규범을 통역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사실 판단자는 원진술자의 원래 답변을 즉시 청취하지 못하고, 통역인이 재차 질문하였을 때 현출된 답변만 듣게 된다.

다. 비논리적인 답변 통역

필자가 호주 통역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Lee 2009a)에서도 가장 통역하기 어려운 점이 애매모호하고 비논리적인 증언으로 꼽힐 정도로, 재판과 법률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때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하고,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거나 답변이 논리에 맞지 않거나,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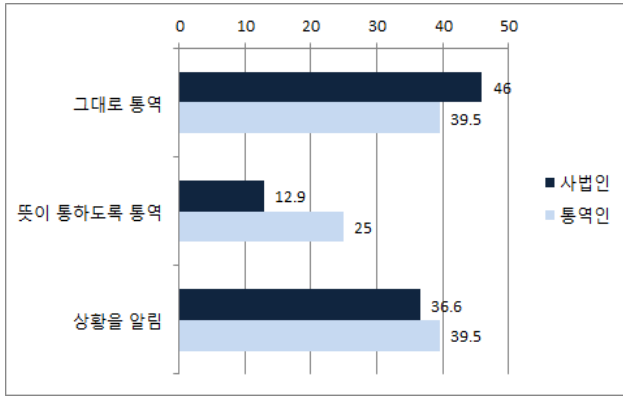


그림 5. 비논리적인 답변 (단위%)

비논리적이고 황설수설하는 답변도 그대로 전달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법인과 통역인의 답변은 달랐다(그림 5 참조). 사법인들 중에는 비논리적이고 황설수설 답변을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46%). 반면 통역인의 경우 그대로 통역한다는 답과 상황을 알린다고 답한 응답자 숫자가 각기 39.5%였다. 뜻이 통하게 통역해야 한다고 답한 통역인 응답자가 25%로 사법인의 두 배 정도였다. 원진술자가 비논리적인 답을 하였을 때 통역인의 대응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 청자의 이해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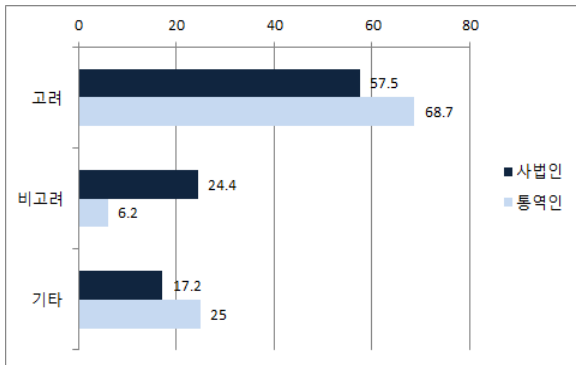


그림 6. 신문사항 통역시 청자의 이해 고려여부 (단위 %)

한국어로 진행되는 신문의 경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신문사항을 쉽게 풀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신문자의 역할인 것처럼,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문할 때에도 질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통역사가 아닌 신문자가 할 일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 참가한 사법인과 통역인 모두 사법통역의 정확성이라는 원칙보다 청자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통역인이 어렵고 복잡한 신문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통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그림 6 참조). 통역인의 68.7%가 청자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청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통역인은 6.2%에 불과하였다. 일단 충실하게 통역하고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거나 재판부에서 요청하였을 때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마. 문화중재

위에서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통역인이 문화차이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엇갈렸다(그림 7 참조). 사법인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숫자가(53.2%)가 통역인이 문화차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한 반면 통역인의 77%가 이렇게 답하였다. 특히 외국어 통역사보다도 수화 통역사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57% v 90%).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답은 기초적인 사항만 통역인이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 문화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인의 35.9%와 통역인의 20.8%가 이 입장을 취했다. 반면 통역인의 문화중재에 반대하는 입장은 소수의 의견이었다. 사법인의 8.6%와 통역인의 4.1%가 반대하였는데, 수화 통역사 중에는 한 명도 반대의견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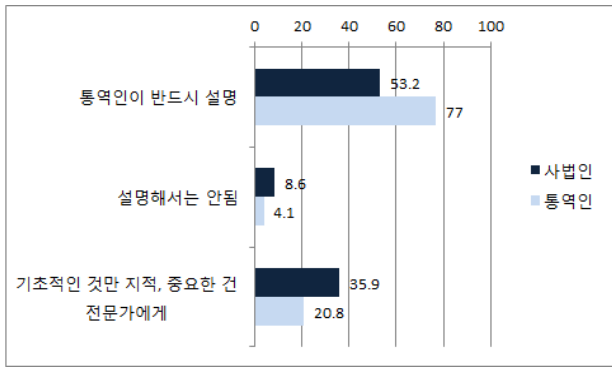


그림 7. 사법통역에서 문화 중재 (단위 %)

사법통역시 문화 중재에 대한 사법인과 통역인 집단간 의견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유의확률값 0.03). 호주 사법인의 46%와 통역사의 28%가 문화차이를 통역해주어야 한다고 답한 Lee(2009a)의 결과에 비해 한국 사법인과 통역인들 모두 통역인의 문화중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화중재와 관련해서 통역인이 밝혀야 할 문화 요소를 문화와 관련된 언어표현, 관습 및 제도, 몸짓, 기타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아래 그림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가자들은 문화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사법인의 76%, 통역인의 79%). 사법인의 61.8%와 통역인의 50%가 문화적 관습과 제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답하였고, 사법인의 50.3%와 통역인의 62.5%가 제스처와 몸짓을 꼽았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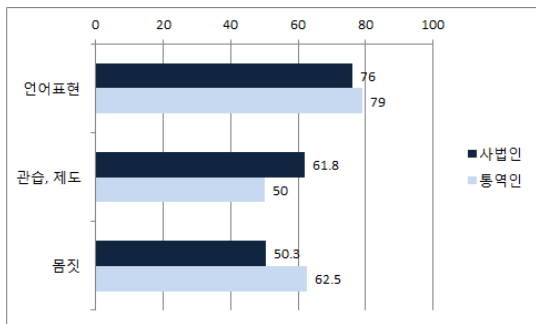


그림 8. 통역인이 밝혀야 할 문화 요소 (단위 %)

Lee(2009a)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한국 사법인과 통역인의 응답률이 훨씬 높다. 특히 판사와 외국어 통역사의 경우 호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두 배에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다. 한국 사법기관과 사법 통역인들이 문화차이에 대해 통역인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통역해주기를 기대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법통역인들이 문화중재를 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요청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설명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고 문화적 이해를 고려한 통역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통역인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편견이 개입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문화중재로 인해 사법통역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통역인의 문화중재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하는 사법통역 규범을 고려할 때 한국 사법통역에서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중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사법인과 통역인의 시각차이가 통역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4.6. 오역에 대한 대처

사법통역에서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즉시 통역오류에 대한 정정이 이뤄져야 한다(Hewitt 1995: 136). 또한 상대방측 통역사나 동료 통역사의 통역에 관해 내용상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있는 동안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Hewitt 1995: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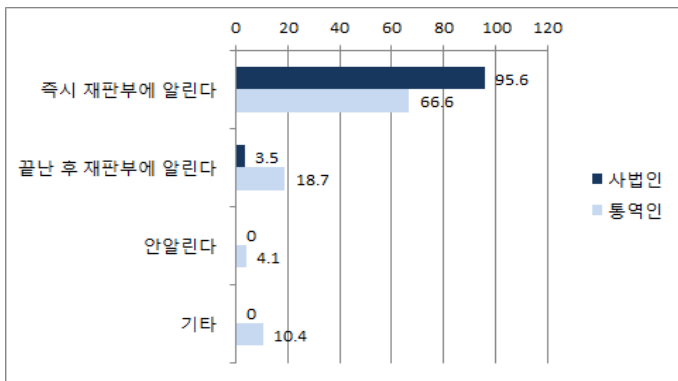


그림 9. 오역 대처

본 연구에서도 오역이 발생했을 때 통역인이 즉시 오역임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지만 응답률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법인(95.6%)이 즉시 오역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답한 데에 비해 통역인의 66.6%가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답하였다(그림 9 참조). 한편 휴정동안이나 재판이 끝난 후에 알린다고 답한 통역인도 18.7%로 적지 않았다.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답한 사법인은 한 명도 없었다.

통역인이 2인 이상 배석할 때 통역상 오류에 관한 대처에 관해서도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법인의 88%와 통역인의 72.9%가 즉시 알린다고 답하였고, 통역인의 10.4%와 사법인의 9%는 굳이 알리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통역 오류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는 실제 법정통역 현장에서 오역이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류 문제를 지적하는 절차에 대해 재판규칙을 마련해둬으로써 무질서나 혼란 및 불필요한 긴장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통역오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에도 통역인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체면전략이 통역행위와 법정담화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오역에 대한 대처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고,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Jacobsen 2008; Lee 2009c, forthcoming 참조).

5. 나오는 말

본고는 사법인 139명과 통역인 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직업별 프로파일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화중재와 화자 스타일 재생, 동문서답 및 오역에 대한 대처 등 세부적인 규범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법통역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사법현장에서 이언어간,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역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사법통역 규범에 대해 참가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드러났는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통역교육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

법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통역행위는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법통역 규범에 관해 사법인과 통역인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올바른 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사법인과 통역인간의 논의도 필요하다. 사법통역사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법통역의 질적 개선에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사법통역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통역의 실제에 대해 알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사법통역 규범과 차이가 있는 인식이나 태도가 실제 사법통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법인과 통역인, 그리고 외국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역인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법정통역 담화분석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였으나 또 하나의 사용자 집단인 외국인의 사법통역에 대한 인식도 후속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 정혜연 · 이상빈 (2008)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 김한식 · 주진국 · 정정림 (2008)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 『외국인을 위한 수사 · 공판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서울: 대검찰청.
- 법원행정처 (2009) 『법정통역인편람』. 서울: 법원행정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형사법정통역사교육자료』,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지은 (2011) 법정통역 담화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회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1-198.
- _____ (준비중) 『다문화사회의 절차적 정의를 위한 사법통역 연구』.
- AUSIT (n.d.) Code of ethics. <http://server.dream-fusion.net/ausit2/pics/ethics.pdf>
(2011년 6월 11일 검색)
- Barnett, M. (2006) 'Mind your language: Interpreters in Australian immigration

- proceedings',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Law Review* 10: 109-138.
- Barsky, R. (1996) 'The interpreter as intercultural agent in convention refugee hearings', *The Translator* 2(1): 45-63.
- Berk-Seligson, S. (2002)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2nd edn), Chicago/London: University Chicago Press.
- Commonwealth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1991) *Access to Interpreters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de Jongh, E. M. (1992) *An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Theory and practi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Edwards, A. B. (1995) *The practic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Fenton, S. (2001). Expressing a well-founded fear: Interpreting in convention refugee hearings. <http://www.refugee.org.nz/Reference/Sabine.html> (2011년 9월 2일 검색).
- Garzone, G. (2002) 'Quality and norms in interpretation', in G. Garzone and M. Viezzi (eds.),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07-19.
- Gonzalez R. D., Vasquez, V. and Mikkelson, H.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s: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 Hale, S. B. (2004)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NewYork: Palgrave.
- _____ (2008) 'Controversies over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in C. Valero-Garcés and A. Martin (eds.) *Crossing Borders in Community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9-121.
- Hewitt, W. (1995) *Court Interpretation: Model guide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state courts*. Williamsburg VA: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Jacobsen, B. (2008) 'Interactional pragmatics and court interpreting: An

- analysis of face', *Interpreting* 10(1): 128-58.
- Laster, K. and Taylor, V. (1994) *Interpreters and the Legal System*, Leichhardt: The Federation Press.
- Lee, J. (2009a) 'Conflicting view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court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 _____ (2009b) 'When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isclosed in court interpreting', *Multilingua* 28: 379-401.
- _____ (2009c)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rpreter-mediated courtroom examination: A discourse-analytic study*. Unpublished PhD thesis. Macquarie University.
- _____ (2010)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번역학연구』 11(1): 339-59.
- _____ (forthcoming) 'A study of facework in interpreter-mediated courtroom examination', *Perspectives*.
- Mikkelsen, H. (2000)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Manchester: St. Jerome.
- _____ (n.d.) The court interpreter as guarantor of defendant rights. <http://www.acebo.com/papers/guarantr.htm>.
- Morris, R. (1993) 'The interlingual interpreter - cypher or intelligent participan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6 (18): 271-91.
- _____ (1995) 'The moral dilemmas of court interpreting', *The Translator* 1(1): 25-46.
- NAJIT (n.d.)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http://www.najit.org/about/NAJITCodeofEthicsFINAL.pdf>.
- Shlesinger, M. (1991) 'Interpreter latitude v. due process: Simultaneous and consecutive interpretation in multi-lingual trials', in S. Tirkkonen-Condit (ed.) *Empirical Research in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Tubingen: Gunter Narr Verlag Tubingen, 147-55.

[Abstract]

A study of legal interpreting service providers' and users' perceptions of the norms in legal interpreting

Lee, Ji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legal interpreting service providers' and users' perceptions of the norms in legal interpreting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based survey of 139 legal professionals and 48 interpreters in Korea. The legal respondents include judges, attorneys, prosecutors, prosecution investigators, and police officers, and the interpreting respondents include both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foreign language interpreters. The study reported in this paper canvassed the respondents' profiles, such as age, gender, and work experience, and their views on the role of the legal interpreter and practical issues related to accuracy in legal interpreting. The data analysis revealed a gap in the legal professionals' and the interpreting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he legal interpreter, specifically, cultural mediation, reproduction of speech styles and irresponsible testimony, and coping with mistransl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both groups of respondents lack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norms in legal interpreting, which may have implications for legal proceedings. This paper argues for education for both groups of respondents to raise their awareness of the norms in legal interpreting for quality interpreting.

▶ Key Words: legal interpreting, norm, interpreters, legal professionals, questionnaire-based survey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조교수

lee.jieun@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통번역교육, 담화분석연구

논문투고일: 2011년 07월 22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